

2020-9호

09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행복한 **행복의정**

의정정보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9 호

09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10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임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2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27 서울시의회, 16년 간 방치된 상가,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재탄생 된다!
- 28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공식 출범
- 30 대구시의회, 온누리상품권 환전, 미가맹 상인도 한시적 허용 건의
- 34 인천시의회,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 37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발대식 개최



- 39 경기도의회, 본회의 표결 앞두고 대대적 의석 재배치 등‘방역만전’
- 41 전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개최...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본회의장 참석 제한
- 43 경남도의회,“부끄러운 일제잔재, 경남에서 뿌리 뽑겠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 4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55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질의
- 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질의
- 61 전라북도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질의
- 6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9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8. 20.] [대구광역시조례 제5466호, 2020. 8. 2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장려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 및 이용
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부시장 및 구청장·군수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이 속한 1주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9. 2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543호, 2020. 9. 2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 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정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9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377호, 2020. 9.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382호, 2020. 9. 1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

제4조(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

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2. 7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쿡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하였을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1301호, 2020. 9. 17.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 촬영기기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시행 2020. 9. 22.]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1627호, 2020. 9. 22.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체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9호

03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16년 간 방치된 상가,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재탄생 된다!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공식 출범

대구시의회, 온누리상품권 환전, 미가맹 상인도 한시적 허용 건의

인천시의회,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 개최

경기도의회, 본회의 표결 앞두고 대대적 의석 재배치 등 '방역만전'

전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개최...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본회의장 참석 제한

경남도의회, "부끄러운 일제잔재, 경남에서 뿌리 뽑겠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16년 간 방치된 상가,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재탄생 된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 16년 간 공실로 방치되어 온 상가건물 2개동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공간과 나눔카 주차장 등을 갖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강동구 길동 367-1번지, 368-7번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안)이 9월 18일(금) 열린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해당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각 부지에는 22층과 19층의 건물 2개동이 2022년 12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창업공간이, 지상 3층부터는 총 567세대 규모의 청년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했음에도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쳐온 건물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이다”라며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119㎡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나눔카 주차장 포함 총 182대의 주차 공간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보되는 만큼 길동역 인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공식 출범

-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 되길 기대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과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 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 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 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 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 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 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 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이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 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된 반민특위는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 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의회, 온누리상품권 환전, 미가맹 상인도 한시적 허용 건의

- 미가맹 상인 환전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요청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9월 22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비록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 줄 것” 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여기에 더하여, 미가맹점의 한시적 환전 허용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가맹점의 환전분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총4조원

규모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량유통 되면서 현금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미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 설명하면서, “미가맹점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불가능한 관계로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깡 등 불법환전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가맹 상인에 대한 한시적 환전 허용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의회 건의문은 지난 9월 12일 장상수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장협의회에 제출하여 확정된 ‘미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환전 허용 건의안’ 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로, 모든 대구시의원이 취지에 동참하였다.

< 붙임 >

비가맹점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한시적 허용 건의

21세기 최악의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19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많은 국민들이 감염되어 생명을 잃거나 병상에 있으며, 감염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극심한 사회 혼란과 경제충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은 사회활동의 위축과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수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본예산 2.5조, 추경 1.4조 등 총 4조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난지원금조로 발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발행액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 것은 상당히 배려깊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자기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대량유통되면서 시장에서 현금 거래는 자취를 감추고 국민들 대다수가 연일 온누리상품권만 제시하는 우려했던 현실이 닥치자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비가맹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 환전하지 못하는 관계로 자금회전 등,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품

권강 등 불법환전이 난무해 유통질서 역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용도로 발행한 것은 전통시장 상인보호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으로 대변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보호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려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즉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보급이 늦어진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신하는 용도로 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으로 발행한 전통시장상품권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맹 상인들에게도 환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일치된 생각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미가맹점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가맹점 환전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해 전통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 독점적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는 9월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 등을 주제로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대면 방청은 제한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http://tv.icouncil.go.kr>)을 통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공공배달앱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래두기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 개편 이슈가 겹쳐 배달앱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1) 공공배달앱은 운영형태에 따라 가칭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0~2%대의 저렴한 중계수수료로 운영(현재 민간 배달앱 수수료는 6~12%대)
▶(공공주도형)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배달앱 시스템을 구축·운영(군산시 ‘배달의 명수’ 등)
▶(민간주도형) 지자체와 민간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 자비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배달앱의 지역사회상품권 결제시스템 연결 등 행정·홍보지원을 맡아 민간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함.(서울시 ‘배달제로 유니온’, 충청북도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등)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발제자 3명, 토론자 7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배달앱 독과점이슈와 수수료 인상으로 지자체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없이 축적된 경험과 기술변화가 중요한 영역에서 공공의 역량이 민간에 미치지 어렵다.” 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사례로 군산시 ‘배달의 명수’와 인천 서구 ‘배달서구’ 운영성과 등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승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천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배달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년 3월에는 18.2%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독과점 배달시장의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이며, 공공배달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공익목적의 경제정책이다.” 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강원모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경계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현재의 구도가 지속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독과점 견제를 위해 공공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이 바람직하며 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

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하였다. 또한 김희철 인천광역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은 서울시 ‘배달제로 유니온’ 과 같이 제한된 공공의 역할 범위에서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만나플래닛 박범기 이사는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오랜기간 투자와 기술개발로 준비된 민간기업을 발굴하여 공적 역할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하였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공공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라며 “서울시와 충북청북도와 같이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 연결 등 행정·홍보지원을 맡는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회장 박관열, 더민주, 광주2)’은 9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정립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의원 연구모임으로서 박관열 회장과 이종인 간사(양평2) 외, 강태형(안산6), 김명원(부천6), 김우석(포천1), 김태형(화성3), 박태희(양주1), 배수문(과천), 백승기(안성2), 성수석(이천1), 송영만(오산1), 양경석(평택1), 원미정(안산8), 유근식(광명4), 윤용수(남양주3), 이명동(광주3), 채신덕(김포2), 최만식(성남1), 최승원(고양8)의원 등 19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날 발대식에는 연구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2019년 소모임으로 시작한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이제 정식 연구모임으로 발족되었다”며,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정기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연구포럼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으며,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표결 앞두고 대대적 의석 재배치 등 ‘방역만전’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앞두고 거리두기를 통해 안전한 안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의석을 대대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경기도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46개 안건의 표결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141명 도의원 전원이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내 임시의석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좌석 수는 도의원 의석 141석과 집행부 의석 32석 등 총 173석으로, 열별로 가운데 좌석을 비워둔 거리두기를 실시할 경우 총 115석만 이용 가능해 총 46석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집행부 참석자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등 2명으로 최소화해 집행부 의석 20석을 의원석으로 확보하고, 3층 본회의장 뒤편과 4층 방청석에 각각 10개, 16개의 별도책상을 배치해 총 26석의 임시의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임시의석에는 비말방지용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노트북과 마우스를 활용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현국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 회의를 통해 모든 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임시의석 설치 등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 속 지혜로운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을 전 의원의 3분의2수준인 96명으로 제한해 진행했으며,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개회...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본회의장 참석 제한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 37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본회의장 참석자는 체온측정과 손 소독 등을 실시한 뒤 입장한다.

또한 의원들은 제안설명 등 발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 뒤 마이크 커버를 즉시 교체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는 박희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4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 참고

- 전라북도: (기정예산) 77,755억원+(추경예산)3,308억원= 81,063억원
- 전라북도교육청: (기정예산)36,647억원+(추경예산)1,039억원= 35,608억원

이밖에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지용 의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75회 임시회는 16일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부끄러운 일제잔재, 경남에서 뿌리 뽑겠다”

- 8월 1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 된 일본 제품불매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 가운데, 경술국치 1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남도의회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 마련의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일제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를 열어 ‘일제잔재청산의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일제청산은 일회성·계기성·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가야한다” 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에 담당부서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역 일선교육현장에서도 일본이 원산지인 나무 등을 교화·교목으로 지정하거나,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채

택하는 등 22개교, 26건의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내 전반에 친일 잔재 청산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일제잔재청산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진 도의원(창원3, 민주당)은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다. 또한 조례 시행 이후에도 일선교육현장에서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후속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례에는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실태조사의 시행근거가 담겨있어 최근 이슈가 된 바 있는 일제잔재로 의심되는 지명*변경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 창원의 무학산(舞鶴山)→두척산(斗尺山), 정병산(精兵山)→전단산(栴柎山), 사천의 구룡산(九龍山)→귀룡산(歸龍山), 밀양의 천황산(天皇山)→재약산(載藥山) 등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9호

04



최근 제 · 개정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82호, 2020. 8. 28., 제정]

■ 개정이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배분의 적정성 등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4조)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제5조 및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및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시정명령(제6조 및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 법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을 정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5호, 2020.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조항

부 칙 <대통령령 제31015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별표 1의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대통령령 제3101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8.] [법률 제17489호, 2020. 9.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가족이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 등의 휴업·휴교·휴원 또는 자녀의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7조제2항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제2항제8호).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9호

05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질의

전라북도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질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의견20-0173, 2020. 9. 2., 대구광역시 남구]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검토를 청구하는 간이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조례에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

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례에서 사용된 처분, 이의신청 및 재결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와 관련 법령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만약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의 규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수탁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민원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같은 조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같은 법에 따른 행정기관에 포함시키고 있고(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행정기관의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각주: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 및 1997. 8. 22. 법률 제5369호로 제정되어 1997. 12. 31. 시행된 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무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민원처리법의 규정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의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민원처리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에서 “처분”, “재결”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

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분”(각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같은 조례와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처분을 행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개념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포함시키면서(제2조제4호),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行政爭訟)절차 중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준사법(準司法)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행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절차,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裁決)의 효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각주: 「행정심판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 참조)을 제외하고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행정기관에 의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조례로 「행정심판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원처리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 아닌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각주: 「행정심판법」 제4조 참조)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각주: 다만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행정심판법」 제4조제2항 참조)), 이 경우에도 역시 개별법에서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조례로 개별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또는 특별행정심판절차와 다른 규정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의견20-0197, 2020. 9.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질의요지】

- 가. 남동구청장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남동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되어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시설이자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7조에서는 주차장관리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목적에 맞게 부설주차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것이므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대상을 이용 대상에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싣고 있는 경우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부설주차장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사유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도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

인데,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재위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동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고,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어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재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해당 소위원회 참석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의결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의견20-0201, 2020. 9. 10., 전라북도]

【질의요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해당 소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의결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0. 6. 3. 의견제시 20-0118 참조)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내

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 25077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에 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종류를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6조), 위원회의 권한,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개회 등 외에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제62조) 포괄적인 위임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 종류, 위원회의 권한 및 위원의 선임 등 외에는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387p 참조), 의회 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서도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각주: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51p 참조)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에서는 의회에 두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제27조, 제28조, 제33조)하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제38조제1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전라북도조례에서도 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소위원회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한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원할 경우 해당 위원을 다른 소위원회 위원과 의결정족수, 의결권 등에 있어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본회의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켜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각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전라북도조례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석하는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특정한 안건 심사·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위원회를 소관 의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의견20-0193, 2020. 9.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용재산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와 관련하여,

가.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3급 관사에 공실(空室)이 발생할 경우 공무(公務)로 용산구를 방문한 손님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제1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고(제94조의 2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94조의 2제2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운용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의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그 입법형식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다만 성질상 지나치게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어서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운용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중 일부를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용산구에서 훈령으로 정하려는 내용은 용산구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1호 참조))에 속하는 3급 관사(각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서울시용산구조례”라 함)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느바, 이는 용산구 소속공무원들에 의한 용산구 공용재산의 내부적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작아 보이는 점, 용산구에서 입안하려는 훈령의 내용 또한 서울시용산구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 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용산구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3급 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용산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사항을 용산구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제1호)와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그리고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에서는 공용재산을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료의 산출 근거를 규정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94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각 규정에 따를 때 용산구의 3급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공무로 용산구를 방문한 손님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하더라도 용산구가 설치한 3급 관사의 용도 또는 3급 관사를 운영하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용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3급 관사를 숙박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수익 허가시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용산구조례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서울시용산구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용산구조례를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개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5조 등의 내용 역시 개정하려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주: 한편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의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수익 허가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산구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 공무로 용산구를 방문한 손님 중 3급 관사를 숙박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을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무로 용산구를 방문한 손님에게 3급 관사를 숙박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3급 관사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용산구를 방문하는 손님과 체결하게 되는 3급 관사 사용(숙박)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3급 관사의 사용·수익 허가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로 서울시용산구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표지 설명

당진시 영웅바위

‘영웅바위’는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산121번지에 있으며, 한진 나루 동쪽 3.1km지점에 위치한 암초섬에 있는 웅장한 바위이다. 16세기초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웅암(令翁巖)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도 ‘牙山 令公巖’, ‘忠淸道 瑞山地大海口 令公巖’이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홍주지(洪州地) 신평 권역에 영웅암(令翁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영웅바위는 많은 전설들과 고시들에 등장하며 당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문학적, 경관적 상징점이기도 하다

‘영웅바위’에 내재된 당진의 역사성(향토성), 상징성이 높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9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